

의안번호	2205133
의 퇴 인	박수영의원
회 답 일	2024.11.11.
추 계 번호	24E472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재정수입은 2026년 835억원 등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3,339억원(연평균 △8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1]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2025~2029년

(단위: 억원)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 확대 (안 제86조의3)	-	-835	-835	-835	-835	-3,339	-835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 내용	비고																				
1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소득공제 한도 상향 <table> <tr> <th colspan="2">현행</th><th colspan="2">개정안</th></tr> <tr> <th>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h>사업소득금액</th><th>공제한도</th></tr> <tr> <td>4천만원이하</td><td>500만원</td><td>6천만원이하</td><td>900만원</td></tr> <tr> <td>4천~1억원</td><td>300만원</td><td>6천~1.5억원</td><td>600만원</td></tr> <tr> <td>1억원 초과</td><td>200만원</td><td>1.5억원 초과</td><td>300만원</td></tr> </table>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6천만원이하	900만원	4천~1억원	300만원	6천~1.5억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5억원 초과	300만원	
현행		개정안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사업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이하	500만원	6천만원이하	900만원																				
4천~1억원	300만원	6천~1.5억원	6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1.5억원 초과	300만원																				

Ⅲ. 비용추계의 전제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86조의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 공제 등)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이 2024년 중 통과되어,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
 - 징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 2022년 귀속 소득 기준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의 국세통계 신고현황 자료를 이용하여 개정안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
 - 종합소득세는 종합소득규모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규모별 자료를 활용하여 추계
- 현행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이 개정안에 따른 공제 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만큼 증가한다고 전제
 - 향후 5년간 세수효과는 2022년 귀속 기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활용해 구한 세수효과가 유지된다 가정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요약) 현행 사업(근로)소득 규모별 1인당 노란우산공제 평균 공제액에 각 구간별 공제한도 확대 금액 증가율을 반영하여 개정안에 따른 1인당 평균 공제액을 추정한 후, 양자의 차이에 실효세율 및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인상 대상인원수를 곱하여 총 세수효과 추계
 - 이를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각각에 대해 추계한 후 합산하여 세수효과 도출

□ (종합소득세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약 750.7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표 4]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의 세수효과, 2022년 종합소득세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신청인원	1인당 소득공제 (현행)	1인당 소득공제 (개정안)	1인당 공제 증가액	실효세율	1인당 세수효과	총세수감소효과 ²⁾
	(A)	(B)	(C)	(D=C-B)	(E)	(F=D×E)	(G)
합계	1,331,521						75,068.4
0 이하	40,413	2.25	4.06	1.80			
1천만 이하	261,457	1.93	3.48	1.55	0.03	0.04	3,397.7
2천만 이하	276,983	2.57	4.62	2.05	0.03	0.07	5,819.9
3.5천만 이하	258,190	2.87	5.16	2.30	0.06	0.13	10,189.0
4천만 이하	58,374	3.05	5.49	2.44	0.08	0.19	3,315.0
5천만 이하	82,917	2.54	7.61	5.08	0.09	0.44	11,013.8
6천만 이하	62,389	2.55	7.66	5.11	0.10	0.50	9,400.7
8천만 이하	81,696	2.59	5.17	2.59	0.12	0.31	7,549.5
1억 이하	52,283	2.60	5.20	2.60	0.14	0.36	5,748.3
1.5억 이하 ¹⁾	47,573	2.01	6.03	4.02	0.19	0.76	10,930.5
2억 이하 ¹⁾	47,573	2.01	3.01	1.00	0.19	0.19	2,732.6
3억 이하	28,276	1.96	2.94	0.98	0.24	0.24	2,040.0
5억 이하	19,721	1.96	2.93	0.98	0.28	0.27	1,615.2
7억 이하	6,812	1.97	2.96	0.99	0.31	0.30	620.8
10억 이하	3,819	1.97	2.95	0.98	0.32	0.32	367.6
10억 초과	3,046	1.95	2.92	0.97	0.37	0.36	327.8

주: 1) 국세통계연보에서는 1~2억원 이하 구간 자료만 제공함에 따라, 동 구간의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하여 1~1.5억원, 1.5~2억원 구간을 도출

2) 총세수효과는 1인당 세수효과에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를 곱하여 도출,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는 동 공제 신청인원수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고 있는 인원수 비중 추정치(약 30%)를 곱하여 도출

□ (근로소득세 세수효과) 개정안에 따라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할 경우, 2022년 근로소득세 기준으로 약 84.0억원의 세수감소가 예상

[표 5]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의 세수효과, 2022년 근로소득세 기준

(단위: 명, 백만원)

	신청인원	1인당 소득공제 (현행)	1인당 소득공제 (개정안)	1인당 공제 증가액	실효세율	1인당 세수효과	총세수감소효과 ²⁾
	(A)	(B)	(C)	(D=C-B)	(E)	(F=D×E)	(G)
합계	103,992	-	-	-	-	-	8,396.3
1천만 이하	109	0.88	1.59	0.70	0.01	0.00	0.1
2천만 이하	8,106	1.85	3.33	1.48	0.02	0.02	60.3
4천만 이하	25,696	2.39	4.31	1.91	0.05	0.09	711.1
6천만 이하	25,154	2.29	6.86	4.57	0.08	0.38	2,867.5
8천만 이하	13,772	2.38	4.77	2.38	0.11	0.27	1,133.9
1억 이하	8,975	2.44	4.87	2.44	0.14	0.35	950.9
1.5억 이하 ¹⁾	8,094	1.79	5.36	3.57	0.20	0.71	1,736.5
2억 이하 ¹⁾	8,094	1.79	2.68	0.89	0.20	0.18	434.1
3억 이하	3,398	1.84	2.75	0.92	0.28	0.26	261.4
5억 이하	1,740	1.85	2.78	0.93	0.32	0.29	153.7
10억 이하	681	1.85	2.77	0.92	0.35	0.33	67.0
10억 초과	174	1.84	2.77	0.92	0.41	0.38	19.9

주: 1) 국세통계연보에서는 1~2억원 이하 구간 자료만 제공함에 따라, 동 구간의 분포가 균등하다고 가정하여 1~1.5억원, 1.5~2억원 구간을 도출

2) 총세수효과는 1인당 세수효과에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를 곱하여 도출, 소득공제 확대 대상 인원수는 동 공제 신청인원수에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불입하고 있는 인원수 비중 추정치(약 30%)를 곱하여 도출

4. 세수효과 요약

- (귀속기준) 소득 발생연도 기준으로 살펴보면,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함에 따라, 소득세수는 2025년에서 2029년까지 5년간 총 4,173억원(연평균 △8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표 6]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소득 발생연도 기준, 귀속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835	-835	-835	-835	-835	-4,173	-835
근로소득세	-84	-84	-84	-84	-84	-420	-84
종합소득세	-751	-751	-751	-751	-751	-3,753	-751

- (징수 기준) 소득세 세목별로 징주시점을 반영하여 세수효과를 합산할 경우 소득세는 2025~2029년 동안 총 3,339억원(연평균 △835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됨

- 징수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및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이루어지는 차년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전제

[표 7] 개정안에 따른 세목별 재정수입 변화(징수 기준)

(단위: 억원)

세목	2025	2026	2027	2028	2029	누적	연평균
합계	-	-835	-835	-835	-835	-3,339	-835
근로소득세	-	-84	-84	-84	-84	-336	-84
종합소득세	-	-751	-751	-751	-751	-3,003	-751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세제분석1과	강민지	박연서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강민지	02-6788-4746	min1231@assembly.go.kr